

2024년 광주·전남 반도체 인재양성 상생협력 사업 협약서

- 사 업 명: 광주·전남 반도체 인재양성 상생협력 사업
- 사업기간: 2024년 3월 1일 ~ 2025년 2월 28일
- 사 업 비: 금삼억원(₩300,000,000)
- 협약당사자
 - “전담기관” 광주광역시교육청
 - “주관기관” 전남대학교

2024년 광주·전남 반도체 인재양성 상생협력 사업에 관하여 “전담기관”과 “주관기관”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‘2024년 광주·전남 반도체 인재양성 상생협력 사업’을 추진함에 있어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내용 등) ① “전담기관”이 “주관기관”에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재양성
 -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양성
 - 재직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
 - 초·중·고 연령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
2. 산업육성
 - 광주·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협력
 -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기업 지원 등
3. 그 외 상호 사업 관련 기타 업무

② “주관기관”은 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“전담기관”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업비 관리 및 사용)

- ①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귀속된다.
- ② 전남대학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산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특별히 정한 지침이 없는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에게 귀속된다. 다만,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남대학교의 협의 하에 처리 방안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“전담기관”과 “주관기관”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

제4조(사업기간)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·수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② 1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 체결 이전에 “주관기관”이 수행한 제2조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본 협약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사업비 지급 및 집행) ① “전담기관”은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(이하 “사업비”라 한다)를 협약 체결 후 “주관기관”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, 그 금액은 “주관기관”의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참작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“전담기관”이 결정한다.

② “주관기관”은 사업비를 “전담기관”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 하며,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·집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사업비 관리) ① “주관기관”은 사업비를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“주관기관”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“주관기관”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정산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사업비 정산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“전담기관”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사업비 정산) “주관기관”은 “전담기관”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협약의 변경) “전담기관”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“주관기관”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, 지급시기 및 사업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의 해약 등) ① “전담기관”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1. “주관기관”이 협약내용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
2.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와 유·무형적 발생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제10조(권리·의무의 양도 제한) “주관기관”은 “전담기관”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1조(손해배상 등) ① 이 사업의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에게 비용 또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② 일방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할 때에는 상대 당사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관계자료 제출 등) ① “주관기관”은 “전담기관”으로부터 사업추진 현황, 관계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② “주관기관”은 사업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결과 최종보고서를 “전담기관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적재산권의 소유권 및 사용권 등)

① 본 사업의 결과로 산출되는 유·무형의 결과물 및 자료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콘텐츠 사용권은 광주광역시교육청, 전남대학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약의 운영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“전담기관”과 “주관기관”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며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“전담기관”의 해석에 따른다.

제3조(협약서의 보관)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“전담기관”과 “주관기관”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4년 3월 일

 **광주광역시교육청**
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

광주광역시교육감



전남대학교

전남대학교 총장

